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6층 ~지상43층, 총 2개동 아파트 351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35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36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재2항 : 10% 이내)
- 추정 특별공급 청약시기 : 2023년 03월 27일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59.9721A	59A	59.9721	25.5683	85.5604	43.2521	128.7925	9.4204	39
	059.9435B	59B	59.9435	26.0361	85.9796	43.2315	129.2111	9.4159	39
	074.9996	74	74.9996	31.6970	106.6966	54.0898	160.7864	11.7810	156
	084.9322	84	84.9322	34.4181	119.3503	61.2531	180.6034	13.3413	117
	합 계								351

### 2) 기관별 공급세대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분		59A	59B	74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3	2	9	
	국가보훈대상자	-	-	2	2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2	2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2	2	5	
	중소기업 근로자	-	1	2	2	5	
	장애인	부산광역시	1	-	2	1	4
		울산광역시	-	-	1	1	2
경상남도		-	-	1	-	1	
합계		4	4	15	12	35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을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II 공급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3.03.17.(금)	청약홈 홈페이지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회신	2023.03.22.(수)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 참조)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3.03.28.(화) 09:00~17:30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2023.03.28.(화) 10:00~14:00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04.04.(화)	청약홈 홈페이지
계약 기간	2023.04.17.(월) ~ 2023.04.19.(수)	당사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b>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b>대상자 및 통장사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각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ul>			
	기관추천 구분	관련 법규	해당기관	통장사용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통장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현장접수처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견본주택
- 홈페이지 : [www.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com](http://www.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com)
- 대표번호 : 1522-0310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9, 20층(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9, 20층(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2137895	110111-2638752

#### ■ 현장접수처 및 현장 위치

